

가설건축물존치기간만료예고문

귀하께서 축조하신 가설건축물의 축조기간이 아래와 같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.

허가신고번호	2006-건축과-가설건축물축조신고-93	허가신고일자	2006-07-28
건축주	서울특별시		
건축주소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		
대지위치	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5		
만료존치기간	2018-03-31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시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. •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• 신고한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만료 후 즉시 철거하지 않거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시면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. 		

2018년 02월 07일
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
